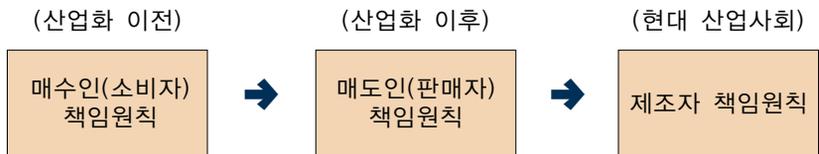


제조물책임법의 이해

□ 손해배상책임의 발전



□ 제조물책임의 탄생 및 의의

제조물책임은 196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조립식 동력 선방의 제조자는 소비자가 아무런 검사도 없이 그 제품을 사용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시장에 제품을 유통시키고, 그후에 그 제품에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결함이 존재하는 것이 밝혀지면 제조자는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을 진다.」고 판시함으로써 제조물책임이 탄생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EU, 일본, 호주, 중국, 브라질, 필리핀 등 30개 가까운 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은 결함 있는 제품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피해자가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것만을 증명하면, 제조자는 결함제품을 제조한 것에 고의·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 다른 책임과의 구별

	채무불이행 책	하자담보책임	보증책임	일반불법행위 책	제조물책임
책임의 성격	계약책임	계약책임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불법행위책임
과실필요여부	과실필요	과실불필요	과실불필요	과실필요	과실불필요
손해배상범위	모든 손해	제품 자체	보증내용	모든 손해	확대 손해

□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

○ 적용대상 제품(2조 1호 참조)

- 제조물책임은 주로 대량생산·대량소비되는 제품에 대해서 적용될 것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가공·제조된 모든 동산」이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 「가공」 또는 「제조」란 손을 가함으로써 물건의 종류·성질이 변하는 경우를 널리 포함하는데 가공은 동산을 재료로 하여 그 본질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거나 그 가치를 더한 것을 말한다. 제조는 제조물의 설계·가공·검사·표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로서 생산보다는 좁은 개념이며, 서비스는 제외된다.
- 「동산」이란 우리 민법상의 동산으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하며,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동산에는 전기 등 무형 에너지 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스팀, 상수도 또한 유체물로서 당연히 포함된다.
- 중고품·재생품이 포함된다.
- 부동산이나 다른 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도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건물이나 토지에 부착된 공조설비·조명설비·승강기 등을 포함한다.
- 미가공 농림수축임산물(예: 냉동·보존·조리 등에 의하여 물건의 종류·성질(속성)이 변한 경우에는 제조물에 포함시킨다.
- 부동산은 제외된다. 다만 아파트 등 대량 공급주택은 제외된다.
- 소프트웨어·정보 등 지적재산물은 제외된다.
- * 시작품일 경우, 불특정 또는 특정 소비자에게 공급된 이상 포함된다. 예를 들어 트램플린 제조자가 신형 트램플린을 제조하여 회사 앞 공터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에게 제공하였다면 제조물책임대상에 해당 된다.



○ 책임의 주체(2조 3호 참조)

- 결함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로 다음의 사람이 책임주체에 해당한다.
- 완성품 제조업자·가공업자
- 부품 또는 원재료 제조업자·가공업자
- 표시제조업자·가공업자 PB상품, OEM상품
- 수입업자
- 도·소매업자 등 공급업자 : 제조업자·가공업자·수입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차적으로 책임을 부가할 수 있다.

- 용역 제공자 : 설비업자, 운반업자 등 단순히 용역만 제공하는 자는 책임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 「업(자)」이란 동족의 행위를 반복·계속하여 한 경우를 말하며, 영리목적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다.
- 제빵업자가 팔고 남은 빵을 고아원에 제공하였으나, 이를 먹고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O)
- 경품·답례품으로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O)

○ 결함의 개념·유형·판단기준(2조 2호 참조)

- 제조물책임에서는 제품의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한다.
-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제품의 제조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 제조물책임법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 결함이란 「제조, 설계 또는 포시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안전성이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하고,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애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다.

※ 결함과 하자의 구별

하자는 제품자체의 기능적 측면에서 불량이나 결함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결함은 소비자의 안전 측면에 피해·위험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 결함의 유형

- 제조상의 결함 : 제품의 원료·부품의 제조·가공과정 등에서 생긴 결함으로 설계도나 사양서에 합치되지 않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것
- 설계상의 결함 : 제품의 외형, 품질, 구조의 설계에 내재하는 결함으로 합리적으로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것
- 표시상의 결함 :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적당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부적당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지시나 경고 기타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것

* 표시상의 결함과 관련, 제조업자가 발행한 설치·조립 등의 매뉴얼·지시서의 오류에 기인

하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 위험의 인수문제 : 제품의 명백한 위험에 대해서는 경고 지시가 없어도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① 결함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 피해자의 과실상계가 인정되는 경우, ③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위험이 중대한 경우)로 나뉜다.

*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의 관계 : 피해·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안전한 설계가 경제적·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위험에 대한 지시·경고만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어 제조업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결함의 판단 기준

- 표준일탈기준 : 제조상의 결함을 판단할 때 이용되고, 제품의 통상의 상태에서부터 일탈하고 있는 경우 결함으로 인정된다.
- 소비자기대기준 : 설계상의 결함이나 표시상의 결함을 판단할 때 이용되며,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기대하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결함으로 인정되나, 지금은 이를 판단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위험효용기준 : 설계상의 결함이나 표시상의 결함을 판단할 때 이용되며, 제품이 갖는 위험성이 유용성을 상회하는 경우 결함으로 인정된다. 여기에서는 ① 제품의 유용성과 필요성, ② 제품의 안전성과 손해발생의 개연성 및 손해의 정도, ③ 제조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④ 소비자에 의한 위험방지 가능성, ⑤ 위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⑥ 제조업자에 의한 손실분산의 가능성 등의 요소를 비교형량

- 소비자의 오사용

- 통상인이 행할 수 있는 오사용으로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고려한 설계와 표시에 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인정한다. 소비자의 실수·오사용에 대해서는 과실사예가 인정 될 것이다.



※ 전기제품 PL보험 가입문의 : 전기제품안전협회 김영탁 과장, 김하나 주임(Tel. 02-579-3291 / Fax. 02-578-3640)